

※ **법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씨카드 가맹점 특약서

(원격지 구매전용 가맹점용)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길동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비씨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특약한다.

제 1 조 (목 적)

이 특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가맹점 약관상의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갑”과 “을”의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원격지구매시스템 : 비씨카드(회원사)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로 물품을 결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방문없이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② 회원 :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회원 중 「원격지구매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행기관 사용자
- ③ 원격지구매가맹점 : 「원격지구매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한 가맹점

제 3 조 (신용판매 범위)

이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갑”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이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구매 가맹점에서 결제하는데 한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신용판매 방법)

- ① “을”은 신용판매시 마다 “갑”이 인정하는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승인 및 승인 취소를 받아야 한다.
- ② 거래승인은 반드시 물품 판매시에 받아야 하며 물품 판매시점과 거래승인 시점이 다를 경우 “갑”은 동 승인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신용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

“을”은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카드사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카드사는 동 거래승인 내역을 검증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일(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에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 6 조 (가맹점 수수료)

“갑”은 “을”이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한 매출에 대하여 1%의 가맹점 수수료를 징구한다.
단, 동 수수료는 “갑”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 7 조(정보유출의 금지)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책 임)

- ①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과 "을" 또는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을"이 해결하며, "갑" 또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 또는 회원이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전항에 규정한 "을"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다음번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변제·충당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효력발생 시기 및 유효기한)

본 특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한은 1년으로 하되,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특약의 우선 적용)

본 특약은 "비씨카드 가맹점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11 조 (준 용)

본 특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간의 가맹점 약관, "갑"과 부가통신업자간의 관련 특약의 순으로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 : 비씨카드 주식회사 (인)

을 : (주)길동



※ 법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